

[세션 1] 주제발표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재판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 -

강 동 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재판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 -

강 동 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이하 ‘알권리’라고 한다) 보장을 이유로 하여 재판중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 허용은 아직 유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마치 유죄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결과가 되고, 중계방송을 통해 피고인의 신원 등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며, 더구나 여론의 영향에 의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학자나 법원의 태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반면, 일반인의 경우 법정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해 법정출입이 제한되면서 주요한 재판의 경우에는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하급심의 경우에도 재판중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해지고 있다. 대법원도 2017년 8월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51호, 시행 2017. 8. 4.)을 개정하여 그동안 ‘재판개시 전’에만 허용하던 재판중계를 ‘판결선고’의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규칙 개정은 재판중계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양측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히,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재판중계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 및 재판중계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고, 사법신뢰확보

수단으로서의 재판중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¹⁾

II. 재판공개 및 재판중계에 관한 현행 법제

1. 재판공개에 관한 현행 법제

가. 재판공개에 관한 법규

헌법 제27조 제3항 후단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법밀행주의를 배격하고 공개재판의 원칙을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109조에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는 헌법 제109조와 동일한 규정을 두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59조에서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장의 촬영 등 행위의 허가에 관해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중

1) 이 글은 강동욱,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대검찰청, 2017. 3, 122-155면; 강동욱, “국민의 알권리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7. 4, 101-126면 등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임.

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고 함으로써 허가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함으로써 허가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17년 8월 4일 동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51호, 시행 2017. 8. 4.)을 통해 제5조 제1항에서 촬영 등 행위가 허용되는 범위를 종전의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서 ‘판결 선고 시’(제1호)까지 확대하는 한편,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 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촬영 등의 행위에 있어서 “2. 법단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감 등을 끝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촬영 등의 행위방법에 대한 일부 제한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2014년 8월 6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대법원규칙 제2548호, 시행 2014.8.6.)을 통해 제6조²⁾에서 하급심 재

2) 동 개정은 소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 것이며, 제1항 제2호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

판에서도 법원 시설 내에서의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재판장은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속 법원 내의 시설’에서,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제3항). 다만, 이때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4항). 동 규정은 법정의 공간적 한계를 감안하여 법정이 아닌 ‘법원시설 내의 다른 장소’에 한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해 재판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을 위한 TV 등에 의한 재판중계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공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공판절차상 공개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판의

생한 사건의 경우 ‘사실심 재판을 일정 부분 중계하는 것이 피해자 및 그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둔 것이다[대법원 보도자료, “세월호 사건 재판 등에서의 재판 중계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 사법지원실(2014. 8. 6.), 2면].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제361조의5 제9호)를 항소이유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제3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되는 등, 공개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³⁾

나. 재판중계에 관한 법규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대법원규칙 제2456호, 시행 2013. 2. 28.)⁴⁾을 통해 제7조의2에서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2013년 3월 21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정에서의 공개변론을 국정방송인 KTV와 인터넷으로 중계방송⁵⁾한 바 있으며,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계방송을 실시해 오고 있다.⁶⁾ 그러나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

3) 대법원은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4) 동 개정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의 심리를 방송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지향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한 것이다(법제처 자료 참조).

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3175>(2016. 7. 12. 접속). 다만, 당사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20분 지연해 방송하였다.

6) 기타 사례에 대해서는 노재선,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관한 소고(小考)”,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36-138면 등 참조.

칙」에서 대법원의 심리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알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⁷⁾

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와 재판중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제2조 제3호 가목 1))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여기서 ‘법원의 정보’란 법원의 본질적 임무인 재판작용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작용에 관한 정보를 포괄한다. 다만,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재판작용이므로 재판공개는 재판작용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은 ‘문서와 이에 준하는 것’이므로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재판의 중계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7) 따라서 대법원의 심리중계도 현재로서는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적용될 때에 한하여 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 따라서 오히려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판중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규에서는 재판공개 또는 재판중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규들은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알권리의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상 ‘중계방송’의 표현도 알권리의 보장 요청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판중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공개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중계방송’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양 개념은 동일한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⁹⁾

물론, 법원이 2017년 8월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촬영 등 행위의 대상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서 ‘판결 선고 시’(제1호)까지 확대한 것은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심리과정’은 제외되지만 ‘판결선고과정’은 알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칙은 상위법

8)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9)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중계방송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인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공개재판 원칙의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동 규칙을 현행법상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를 허용한 규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래 공개재판의 원칙은 ‘비밀심리주의’ 내지 ‘밀행주의’ 또는 ‘당사자공개주의’에 대응하여 생겨난 것으로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해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개재판의 원칙을 피고인의 권리보호가 아닌,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중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원칙이 발생한 연원이나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 원칙이 갖는 의미마저 상실시켜 버린다.¹⁰⁾

이와 관련하여 재판공개 의미에 대하여 애초의 공판과정 및 판결선고 방청의 자유보장이라는 소극적 협의의 내용을 넘어서 언론매체에 의한 재판정보의 대중전달이라는 적극적 광의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고,¹¹⁾ 공개재판주의가 초창기에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그 자의로부터 시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여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일반 국민의 정보이익에 보다 중점을 두고 간접공개¹²⁾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¹³⁾ 재판중계가 재판공개 범주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10) 박용철·최인화, “공개재판과 언론보도”, 「동양문화연구」, Vol.11,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84, 8면; 이상돈, 「형사소송원론 - 형사소송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법문사, 1998, 268-269면 참조

11)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3, 326면 등

12) 직접공개는 일반 국민이 법원의 법정에서 직접 참석하여 방청석에서 재판을 방청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간접공개는 TV중계나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법정 외에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절차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강동욱,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0, 223-226면).

13) 김재윤,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298면.

그러나 공개재판의 원칙은 재판과정에서 사실 확정과 법률적용의 과정을 감시하고 그로써 법적 상황과 일치하는 결정을 보장하도록 기여함으로써 피고인이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므로 재판의 공개에 의해 일반적 통제가능성하에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그 심리과정의 생생한 기록과 내용 그대로를 대중에게 전달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형식적 공개론).¹⁴⁾ 따라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른 언론보도는 공판절차 및 판결의 기사적 간접보도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고 중계방송을 통한 직접보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¹⁵⁾ 설령 재판공개에 범주에 간접공개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간접공개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중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¹⁶⁾ 대법원규칙에서 촬영 등의 행위 대상을 ‘전 심리과정’이 아니라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과 ‘판결 선고 시’로 제한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칙이 피고인의 기본권의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촬영 등의 행위가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14) 재판의 공개가 법관이 어떠한 증거에 기초하여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심증을 형성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방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공개를 의미한다고 하게 되면, 재판절차가 법관이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방청인 또는 시민들에게 사건을 이해시키고 법적용의 모든 내용을 확인시키는 절차로 되고, 이에 따라 법관은 소송당사자 보다는 방청인이나 시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이나 시민들을 위한 재판이 되어 여론에 의한 재판으로 전락할 우려마저도 배제하기 어렵다(강동욱, 앞의 논문(한양법학), 220면).

15) 김일수, “재판공개에의 원칙”, 「고시계」 Vol.29 No.4, 고시계사, 1984. 4, 150면. 자세한 것은 강동욱, 앞의 논문(한양법학), 218-220면, 224-226면.

16) 외국에서도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나 공개재판의 원칙에 재판중계를 포함시키는 형태의 헌법이나 헌법재판기관의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대법원규칙에서 재판장이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재판 공개를 통한 피고인 보호라고 하는 헌법의 이념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동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조직법」에서 촬영 등의 행위에 있어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촬영 등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장에게 촬영 등의 행위에 관하여 제한 없는 허가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조직법」에서 촬영 등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른 재판공개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중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알권리의 요청에 따른 재판중계에 관한 실정법 규정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규칙에서 대법원의 변론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 될 수도 있다.

III. 재판중계방송 허용을 둘러싼 권리 논쟁

재판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그 헌법적 근거로서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알권리’를 주장하고,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사생활보호’를 들고 있다.

1.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

알권리의 보장은 정부가 국가의 정치과정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법원도 정부의 한 구성부분이며,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도 공무원으로서 헌법 제7조 제1항¹⁷⁾의 적용대상이므로 사법작용은 당연히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알권리는 의견의 형성과 표현의 전제로서 기능하므로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의 수령이 요구되고, 따라서 재판중계는 법정 밖의 일반 국민에게 재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알권리 실현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¹⁸⁾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알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재판중계를 허용하여야 하며, 정부의 다른 두 축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알권리를 위해 카메라의 접근을 허용하는 마당에 역시 정부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¹⁹⁾

그러나 재판중계는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7)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 손태규, “국민의 알권리와 법정 촬영 및 방송”, 「공법연구」 제4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2, 33-34면.

19) 손태규, 앞의 논문, 34면 참조.

알권리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중계로 인해 국가의 사법작용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 소송당사자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공개까지 포함하게 되는 양면성을 가진다. 하지만 알권리는 일반 국민의 대국가적 기본권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 다른 국민인 개인에게 사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까지 그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²⁰⁾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중계가 알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 즉, 중계대상인 재판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중계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함’과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알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유일한 것이거나 당위적인 것도 아니다.²¹⁾

또한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해를 가진 자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사회적 관심사의 대상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설령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형사사건의 재판정보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정당한 이해를 가진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알권리에

20) 정보공개법에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제9조 제4호)는 원칙적으로 공개금지 대상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21) 현행법상 모든 사람에게 재판방청이 허용되고 있고, 재판에 대한 뉴스보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만 국민참여재판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판중계가 없더라도 누구라도 충분히 재판내용을 알 수 있어 불가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노재선, 앞의 논문, 144면).

근거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개별 사건의 재판중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거나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재판중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재판중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피고인의 사생활보호와 재판중계

사법기관은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재판이라고 하는 특수한 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와 달리 헌법상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법관을 비롯한 모든 소송참여자 중에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상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가 추정(헌법 제27조 제4항)되므로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재판중계를 허용하게 될 경우 피고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며, 심지어 유죄자로 인식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²²⁾ 따라서 재판중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안의 실체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정보디지털화로 인해 디지털화 된 정보는 전파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은 만큼 단 한 번의 공개로도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²³⁾ 특히 그

22) 김재윤, 앞의 논문, 303면; 변종필, “공개주의와 공판의 의사소통구조”,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112면, 123면 등.

23)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65-370면.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사후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잊혀질 권리’의 침해까지 야기함으로써 그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²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외에도 재판정에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나 일반 방청인도 재판중계로 인해 초상권 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며,²⁵⁾ 중계방송을 통해 피해자나 증인의 얼굴 등 신상이나 신문과정과 내용이 공개될 경우²⁶⁾ 피고인이나 공범자 등에 의한 보복범죄의 피해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된다.

3. 기본권 충돌 시 재판중계의 정당성 여부

재판중계는 일반적으로 알권리와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학에서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원칙으로서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이 제시되고 있지만,²⁷⁾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면서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제한

24) 김소연, “재판 중계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70면.

25)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초상권자가 뉴스가치가 있는 공적 인물이 아닌 한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이 부각되게 촬영·공포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다(이재진·동세호,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5, 118면). 한편, 중계방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절차라는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사생활의 일부 공개는 감수하여야 한다고 한다(김태형, “재판에 대한 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한국법학원, 2012, 157면).

26) 최근에는 피해자나 증인의 인격권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특정강력범죄(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1조 제6항)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또는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등의 경우에는 심리의 비공개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27) 성낙인, 『헌법학』(제16판), 법문사, 2016, 943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67 결정 등)와 대법원(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 원칙·대안(절충안) 발견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의 원칙에 따라 과잉 금지의 원칙·대안해결방안·최후수단 억제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²⁸⁾ 특히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결부되는 권리이므로 사생활 보호와 충돌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보호가 충돌되는 경우의 해결이론이 그대로 원용된다고 한다.²⁹⁾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³⁰⁾

그러나 재판중계와 관련하여 보면 알권리는 대국가적 기본권으로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며 피고인 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일반 국민을 위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본권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에 사생활 보호는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재판중계는 피고인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다른 인격권에 비해 우월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³¹⁾에서는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양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³²⁾ 특히 재판제도의 목적이 실체 발견에 앞서서 적법절차에 따른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리와 관련하여 재판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여야 한다.³³⁾ 더구

28) 성낙인, 앞의 책, 1249면.

29) 이에는 인격영역이론, 권리포기이론, 공공이익이론, 공적 인물이론, 공적 기록이론 등이 있다(성낙인, 앞의 책, 1249-1250면).

3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31) 이재진·동세호, 앞의 논문, 2015, 115면.

32) 박용철·최인화, 앞의 논문, 8면; 이상돈, 앞의 책, 268-269면 참조.

33) 김소연, 앞의 논문, 266면.

나 알권리의 보장이 사법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에 양보될 수밖에 없다.³⁴⁾

따라서 재판중계는 대립하는 이익들, 즉 피고인 등의 사생활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보장 및 방송의 자유와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이익들을 비교 형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훨씬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나 사법목적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법률’로서 그 대상과 요건 및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사법정의 훼손을 최소화 할 것이 요청된다.

IV. 재판중계방송 허용이 ‘사법신뢰 회복’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기능

재판중계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재판중계로 심리과정이 공개될 경우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사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로 인하여 사법부가 청렴하고 합리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³⁵⁾

34) 미국의 형사절차에서는 철저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고, 변호인 조력권이 잘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와 달리 피고인 신문이 허용되지 않고, 배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언론으로부터 차단되어 비공개로 평결을 하므로 여론으로부터 차단되어 여론의 영향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중계방송이 허용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여론에 의한 재판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계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 법제의 마련을 위한 사례로서 참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35) 전술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참조. 손태규, 앞의 논문, 34면에서는 실제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이 중계될 경우 시민에 의한 감시나 비판을 의식하여 재판장을 비롯한 소송당사자가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와 심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한다.³⁶⁾ 나아가 재판중계를 통해 국민의 법의식과 지식이 고양될 수 있고, 법학자나 법학도 및 변호사들이 방송이나 녹화 테이프를 통해 재판과 관여자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법원 또한 당해 사안에 대해 국민적 정서나 사회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³⁷⁾, 따라서 재판중계가 일반시민의 법의 준수 및 법규범의 실현으로 연결되어 국가공동체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³⁸⁾고 주장한다.³⁹⁾

2. 부정적 기능

재판중계가 반드시 사법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즉, 재판중계로 인해 재판이 희화화될 우려가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과정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는 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⁴⁰⁾ 재판장을 비롯한 법관들까지 중계방송을 의식하여 인기영합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장 직접의 방법이기 때문에 법정의 텔레비전 방송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된다고 한다.

36) 미국의 변호사인 애브람스(Floyd Abrams)는 법정 내의 카메라는 “부패한 검사, 지나치게 판사에 밀착된 변호사 또는 졸고 있는 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손태규, 앞의 논문, 38면).

37) 손태규, 앞의 논문, 36면 참조.

38) 김소연, 앞의 논문, 269면; 조규범, “재판방송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입법학연구」, 통권 제10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13, 220-222면; 한동섭·김형일, “재판중계의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60-64면 등 참조.

39) 이외에도 재판공개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고, 법집행 과정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한다.

40) 손태규, 앞의 논문, 35-36면 참조.

수 있다. 또 법관이 재판중계를 의식하여 사건의 실체 보다는 재판진행 등 절차적 측면에 집중하게 되고,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의 반응이나 영향을 의식하여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사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⁴¹⁾ 법관이 중계를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법관의 직권적 개입을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⁴²⁾

뿐만 아니라 재판중계를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고, 따라서 법관의 재판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비난을 가져오는데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⁴³⁾ 시민에 의한 사법감시기능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법관이 재판중계를 의식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여론에 따른 재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⁴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1항)를 침해하게 되고, 법원의 재판이 사회적 충돌과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⁴⁵⁾

41) 공개주의로 인해 법원이 일반에 만연된 선판단과 기대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변종필, 앞의 논문, 111면).

42) 이에 대하여 재판에 관한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만으로도 형성·변화·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재판중계의 문제점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자질·자격의 문제나 법관에 대한 교육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장 중계방송은 사후의 언론보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청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법관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반 시민의 비판이나 비난이 거의 테러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판중계로 인한 법관의 부담을 모두 법관의 자질이나 자격의 문제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지나친 기대이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43) 김재운, 앞의 논문, 303면; 변종필, 앞의 논문, 112면.

44) 노재선, 앞의 논문, 143면. 재판의 중계방송은 법관들의 초상이 공개되기에(변론 생중계가 1심과 2심까지 확대될 시에는 배심원도 포함) 이에 부담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재판하게 될 소지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144면).

45) 재판중계를 통해 범죄수법이나 범행과정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모방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오히려 범죄자를 영웅화할 우려마저 있다.

더구나 재판중계에 있어서 전문가나 방송인에 의한 해설이 첨가될 경우 일방적인 의견 또는 왜곡된 판단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우려도 적지 않고, 방송사의 선별적 중계로 인해 법집행의 차별화와 사건 왜곡의 우려마저 있다. 특히 방송사들이 재판과정의 일부만을 방송하거나 편집 방송하는 경우는 물론, 반복 방송을 하거나 여러 방송사에서 중복 방송하게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⁴⁶⁾

3. 소결

재판중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재판은 공개된 이벤트이므로 누구나 원하면 다른 사람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는 재판방송을 불허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으며, 재판방송은 단지 양적 관람객의 증대를 의미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로 언론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들이나 방청객들도 마음만 먹으면 법정 내에 몰래 반입한 초소형 카메라나 소지한 스마트폰 등으로 재판과정을 쉽게 녹음·녹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의 방송취재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방송기자의 취재방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의 난립으로 그 폐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⁴⁷⁾ 또한 일반 개인들이 몰래 촬영한 재판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게 편집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유포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합법적인 재판중계에

46) 시국사건이나 이념적인 논쟁이 큰 사건, 사회적 대립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 중계함에 있어서 PD 등이 특정가치관이나 신념에 집착하거나 상업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시민 등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막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47) 김태형, 앞의 논문, 154-155면.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⁴⁸⁾

그러나 재판중계 자체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는 훨씬 심각할 수 있고, 언론의 흥미위주나 선정성 보도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성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⁴⁹⁾ 나아가 재판중계로 인해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사회복귀가 어렵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영원히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회복은 법치사회의 구현은 물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사법의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하여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되거나 사법의 본질인 실체적 진실발견이 경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V.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급심에서의 형사재판의 중계는 피고인의 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해칠 수 있고,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재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판중계가 알권리의 보장과 사법에 대한 신뢰확보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법제와 장치를 통해 재판중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문법관의 자질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논리에 따르더라도 알권리에 따른 재판중계는 법리

48) 김소연, 앞의 논문, 285-287면; 조규범, 앞의 논문, 235면 등.

49) 송희진, “형사재판에서의 공개주의”,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2권, 연세법학연구회, 2001, 116면.

적 정당성도 충분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기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재판중계가 설령 사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면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법원의 일부 형사사건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태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재판중계가 가져 올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⁵⁰⁾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정의 실현과 더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고인의 보호라고 할 것이므로 알권리의 보장과 사법신뢰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재판중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5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위험 수준에 이르러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은 다반사이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http://news.joins.com/article/21994433> 참조).